



제432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주요 지표 급변 시 국회 수시 보고 의무 등〉
■ 김미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6406호)

2026. 2.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문위원 임명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주요 지표 급변 시 국회 수시 보고 의무 등(안 제96조)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미애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1. 29.

다. 회 부 일 : 2026. 1.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은행이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근 대내외 경제 및 금융환경의 변화가 통화신용정책 운용과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상황이나 거시 금융안정상황과 관련된 주요 지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과 영향을 국회가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화신용정책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 또는 거시 금융안정상황과 관련된 주요 지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변동을 보이는 경우 그 주요 원인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주요 지표 급변 시 국회 수시 보고 의무 등(안 제96조)

현행	개정안
○ 평가보고서의 국회보고 -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 작성하여 국회 제출 - <u><신설></u>	○ 평가보고서의 국회보고 - (현행과 같음) - <u>평가보고서에 각 호의 사항 포함</u> 1. 통화량 등 유동성 지표의 변화에 관한 사항 2. 기준금리 결정 등 주요 정책수단의 운용에 관한 사항 3. 국내외 경제 및 금융 여건, 물가 및 성장 동향에 관한 사항 4. 가계부채, 자산시장 불균형 등 금융안정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통화신용정책 및 거시 금융안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u>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상황 또는 거시 금융안정상황과 관련된 주요 지표가 일정 기준 이상 급격히 변동하는 경우 주요 원인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 제출(다만,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로서 공개 시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제출)</u>

현행법¹⁾에 따라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

1) 「한국은행법」 제96조(국회 보고 등) ①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이하 “평가보고서”라 함)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은행 발간 주요 보고서]

보고서	주요 내용	발간주기
연차보고서	매년 우리나라 금융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한국은행의 업무와 경영 현황을 정리한 보고서	연간
통화신용정책보고서	한국은행법 제96조에 따라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에 대하여 작성하는 평가보고서	계간
금융안정보고서	한국은행법 제96조에 따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하여 작성하는 평가보고서	반기
경제전망보고서	국내외 여건 및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거시경제를 전망하는 보고서	계간
지역경제보고서	한국은행 15개 지역본부가 실시한 업체 모니터링 결과 및 입수가능한 통계 등을 바탕으로 파악한 전국/지역의 최근 경제상황을 담고 있는 보고서	계간
지급결제보고서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규정」에 따라 전년도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상황에 관하여 다음연도 4월 금융통화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을 국민과 관계기관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보고서	연간

그런데 이러한 현행 체계는 정책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는 취지에는 부합하나, 보고 항목이 법령상 구체화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음.

또한, 연 2회 이상의 정기 보고 방식은 실시간으로 급변하는 현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국회에 적시에 전달하기에는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이나 거시 금융안정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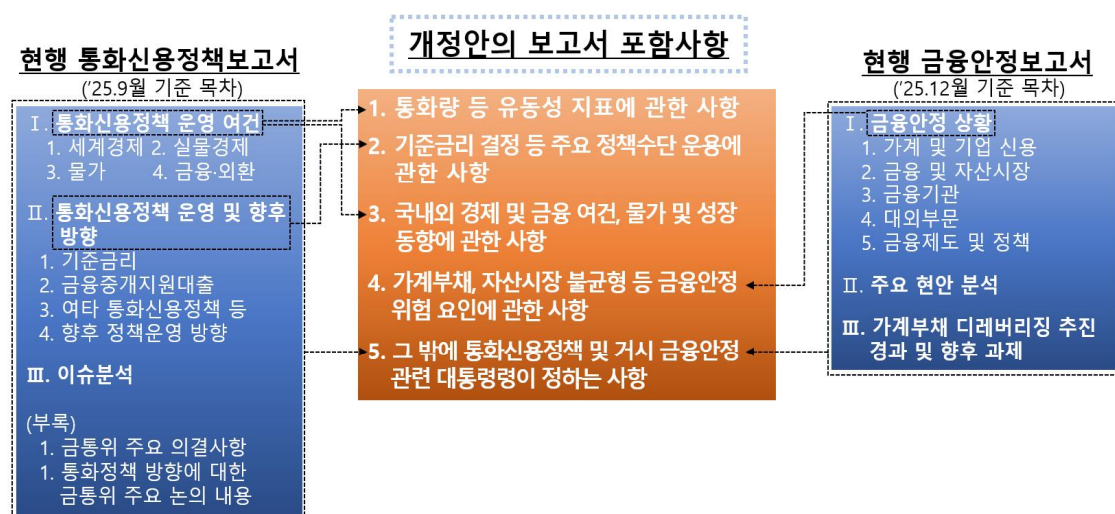
② 총재는 국회 또는 그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보고서와 관련하여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과 관련된 주요 지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경우 그 원인과 영향을
국회가 적시에 파악할 수 있도록 보고 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개정안은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명확히 하고,
통화신용정책 수행상황 또는 거시 금융안정상황과 관련된 주요 지표
가 일정 기준 이상의 변동을 보이는 경우 그 주요 원인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먼저, 평가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하는 것
과 관련하여, 현재 한국은행이 현행법 제96조에 따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는 통화신용정책 운용 여건 및 향후
방향 등에 관한 사항을, 금융안정보고서에는 가계 및 기업 신용, 금융
및 자산시장 등의 금융안정 상황과 금융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현안 분석 내용이 각각 포함되어 있음.

[개정안의 평가보고서 포함사항과 현행 평가보고서상 포함사항 비교]



자료: 한국은행

한국은행에 따르면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및 금융안정보고서에서는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보고서 포함사항을 모두 규정하고 있다는 의견임.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통화신용정책 및 거시 금융안정과 관련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경우, 정보의 누락을 방지하고,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국회 감시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동 개정안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개정안의 내용을 이미 포함해 통화신용정책보고서 및 금융안정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으므로 개정 실익이 없다는 입장임.

또한, 한국은행은 개정안에 따른 평가보고서 포함사항의 명시화 및 대통령령 위임에 대해, 시시각각 변화²⁾하는 금융·경제 상황을 신속적·자율적으로 분석·평가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통화신용정책의 성과와 금융안정 상황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

2) 디지털 뱅크런 등 새로운 형태의 위기나 예상치 못한 경제 이슈 등장

수 항목이 법령에 의해 일관되게 관리될 필요가 있으며, 그 내용에 대해 어떤 분석과 평가를 내릴지는 여전히 한국은행의 고유 영역이므로 정책 수립의 자율성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움.

다음으로, 개정안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상황 또는 거시 금융안정상황과 관련된 주요 지표의 급격한 변동 시 분석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경우 국회가 위기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여 입법적·정책적 대안을 적기에 논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96조제3항은 분석보고서상 한국은행이 시장 상황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따라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자극하여 이미 발생한 지표의 변동성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는 불확실성이 높은 현재 경제 상황에서 기준 설정이 어렵고, 사전 설정한 특정 지표가 변동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경제주체가 이를 시장 불안 또는 위기상황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또한, 한국은행은 특정 경제지표의 변동 시마다 설명책임을 부과하

는 것은 한국은행의 정책결정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고, ‘급격한 변동’의 기준이 경제주체의 기대 형성 과정에서 왜곡요인³⁾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임.

그러나, 개정안은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다.”고 하여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도 국내·외 금융시장의 급격한 변동 시 국회출석보고 및 의원요구자료에 대한 답변 등 국회에 설명책임을 이행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한국은행은 분석보고서 제출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한국은행의 자율적·중립적 정책 수립 및 결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인데, 현재도 지급준비금의 예치, 지급준비자산제도 등 통화신용정책과 관련한 사안⁴⁾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 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3) 사전에 설정된 특정지표 변동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경제주체가 시장불안 또는 위기상황으로 오인할 소지

4) 「**한국은행법**」 제55조(지급준비금의 예치 등) ① 금융기관은 예금채무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이하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라 한다)에 대하여 제56조에 따른 지급준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이상의 금액을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에 대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할 수 있다. 제63조(지급준비자산제도) 금융통화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에 지급준비금과는 별도의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6조(국회 보고 등) ① 한국은행은 매년 2회 이상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상황과 거시 금융안정상황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96조(국회 보고 등) ① ----- ----- ----- -----, 이 경우 평가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 설>	1. 통화량 등 유동성 지표의 변화에 관한 사항
<신 설>	2. 기준금리 결정 등 주요 정책수단의 운용에 관한 사항
<신 설>	3. 국내외 경제 및 금융 여건, 물가 및 성장 동향에 관한 사항
<신 설>	4. 가계부채, 자산시장 불균형 등 금융안정 위험 요인에 관한 사항
<신 설>	5. 그 밖에 통화신용정책 및 거시 금융안정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수행 상황 또는 거시 금융안정상황과 관련된 주요 지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급격한 변동을 보이는 경우 변동의 주요 원인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

현 행	개 정 안
<신 설>	<u>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로 제출할 수 있다.</u>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보고서 제출 절차, 제3항에 따른 주요 지표, 분석 보고서 제출 절차 및 비공개 제출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 의 처

02)6788-5152